

제 호	
행정처분 통지서	
사업시행자	
주소	(전화번호:)
행정처분 내용	
행정처분 사유	
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,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·도지사 직인	